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9차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평가 근거 마련 등 〉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769호)

2026. 3.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이행 점검·평가 근거 마련	3
2. 온실가스 감축 원천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3
※ 참고자료	9
1. 배출권거래제 운영현황	9

I. 제안경위

2025년 10월 28일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통해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에 대한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등을 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상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의한 성취도 및 목표 달성 등 추진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배출권 가격이 현저히 낮아지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설비나 기술에 투자하기보다는 직접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되는 만큼, 저탄소 혁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계에 대한 추

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감축 관련 원천기술 연구개발투자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상·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권 가격 안정화와 배출권거래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평가 근거 마련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점검 및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한 평가자문단 설치 및 전문평가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7조의2(할당계획의 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할당계획의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 제5조¹⁾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하여 계획기간별로 배출허용총량에 관한 사항, 배출허용총량에 따른 해당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 배출권의 총수량에 관한 사항,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관한 사항, 부문별·업종별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²⁾,

할당계획에 의한 목표 달성 등 추진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매년 할당계획의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평가자문단 설치 및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하 “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배출허용총량에 따른 해당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수량에 관한 사항
 3.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관한 사항
 4. 부문별·업종별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량에 관한 사항
 5.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량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방식에 관한 사항
 7. 제12조제3항 및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에 따른 이행연도별 배출권 유상할당 목표비율에 관한 사항
 - 7의2. 제12조제3항에 따른 배출권의 유상할당 방법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5. 10. 28.>
 9.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수량 및 배분기준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차입 및 제29조에 따른 상쇄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해당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 및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부문별·업종별 배출권거래제의 적용 여건 및 국제경쟁력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계획기간 중에 국내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 기술 발전 등으로 할당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할당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할당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할당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에 따라 현재 “제4차 계획기간(2026.1.1.~2030.12.31.)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수립·시행중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배출권 거래제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감축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여짐.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법에 따라 계획기간별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기관을 통한 제도 분석 및 추진실적 점검·평가를 실시³⁾하고 있으며, 기업 배출량 보고 및 인증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연례 운영결과보고서 발간을 통해 할당계획 이행 실적을 매년 평가·관리⁵⁾하는 등, 그간의 제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가 상당 부분 현행법에 반영되어 있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자료의 조사·분석 및 검토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①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에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서 실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기준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배출량의 인증 등) ① 주무관청은 제24조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그 내용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한다.

제26조(배출량 인증위원회) ① 제25조에 따른 적합성 평가 및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 제29조에 따른 상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배출량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4. 법 제24조에 따른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조사·연구

5)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조사·연구 위임

2. 온실가스 감축 원천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원천기술 연구개발투자사업에 대한 금융상·세제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u>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등) ① ----- ----- -----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온실가스 감축 관련 원천기술 연구개발투자사업-----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35조⁶⁾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⁷⁾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과 제33조에 따른 과징금, 제39조에 따른 수수료 및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① 법 제35조 제1항에서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또는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에 대한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10년간 배출권 거래가격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말 40,000 원대에 거래되던 배출권은 2020년 이후 그 가격이 하락추세이며, 2026년 현재 톤당 10,000원 수준에서 거래되는 등 배출권 거래가격의 낮아 기업의 감축투자 유인이 어려워 저탄소 혁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계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온실가스감축 관련 원천기술 연구개발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금융상·세제상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초기·고위험 기술 투자 부담이 완화되고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에 대한 선제적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짐⁸⁾.

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제품·시설·장비의 개발 및 보급 사업
2.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구축 사업
3. 온실가스 저장기술 개발 및 저장설비 설치 사업
4. 온실가스 감축모형 개발 및 배출량 통계 고도화 사업
5.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계수의 검증·평가 기술개발 사업
6.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7.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 효율 향상 등의 촉진 및 설비투자 사업
8.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중요 사업으로서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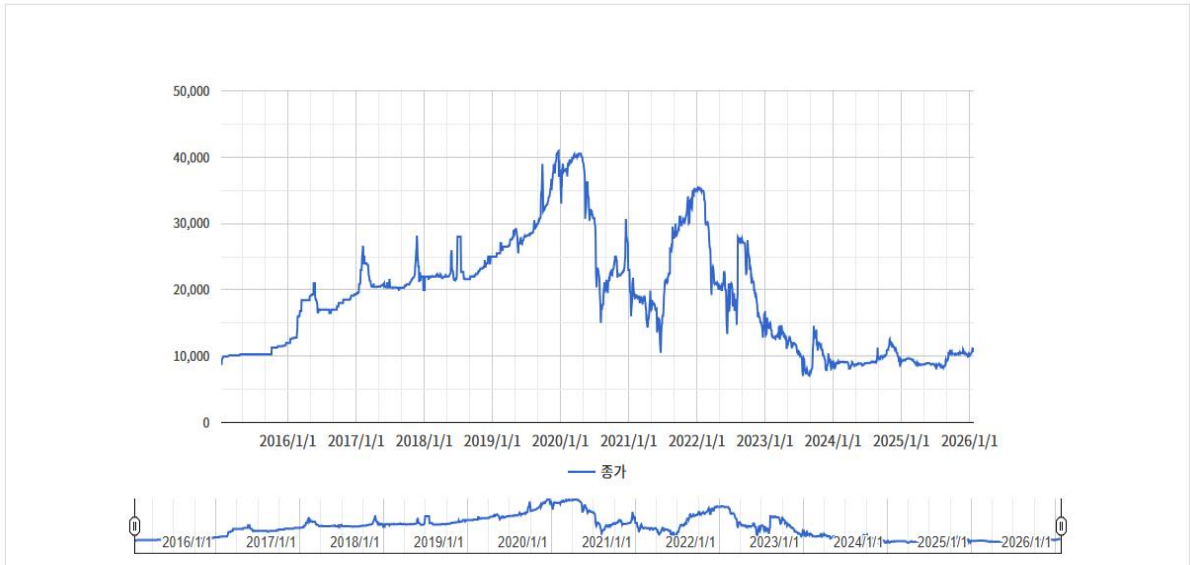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준하여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받지 못하는 할당대상업체가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8) 기후에너지환경부도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혁신기술 투자를 위한 원천기술 연구개발투자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온실가스 배출권 국내 시세]

가격 동향 (증가 기준)

(단위 : 원/Ton)



자료: RE100정보플랫폼(https://www.k-re100.or.kr/doc/sub2_4_1.php)

문 의 처

02) 6788-5536

참고

배출권거래제 운영현황

(개념) 국가가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배출권)을 설정·할당하고 배출권 여유 및 부족 업체간 거래를 허용

* 1차('15~'17), 2차('18~'20), 3차('21~'25) 계획기간을 거쳐 현재 4차('26~'30) 계획기간 진행 중

□ (대상) 146개 업종, 772개 업체('26.1월)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1.7%

*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2.5만t 이상 업체 또는 2.5만t 이상인 사업장 보유 업체

□ (할당)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연도별 목표를 기준으로 국가의 배출량 중 배출권거래제 비중을 적용하여 배출허용총량 설정

○ 과거 배출량(GF), 배출효율(BM) 등을 기준으로 계획기간 배출권 사전할당, 계획기간 중 신·증설 등은 추가할당*, 폐쇄 등은 할당취소*

* (추가할당) 시설의 신·증설,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준수(제약발전) 등
(할당취소) 시설의 가동중지·폐쇄, 할당대상업체의 파산 및 지정취소 등

○ 전체 146개 업종 중 112개는 유상할당*, 수출입 비중(무역집약도)이 높고 탄소로 인한 비용부담(탄소집약도)이 큰 34개 업종**은 100% 무상할당

* (발전) '26 15% → '30 50% 단계적 상향, (발전외) 15%

** 철강·비철금속,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제지 등

□ (거래) 증권시장과 유사한 거래 시스템 구축(운영 : 한국거래소)

* (거래량) 566만톤('15) → 54,159만톤('26.2), (거래가격) 12천원/톤 수준 유지 중('26.2기준)

○ 할당대상업체 외에 시장조성자(9개사), 증권사(21개사) 및 금융기관 등 제 3자 참여 허용

□ (정산) 전년도 배출량 확정(5월) 후 이에 상응하는 배출권 제출(6~8월)

* 배출권 미제출 시 시장가격의 3배 수준의 과징금 부과

○ 감축 유연성 확보를 위해 이월, 차입, 상쇄* 등 업계 이행 지원

* 할당대상업체 외부(국내, 해외)에서의 감축실적 인정 → 상쇄배출권으로 활용 가능